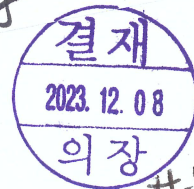
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기12헌기



12/8



#519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
의사담당관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회부의안 : 총 1건 (조례안 1)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 상임위원회)	발의·제출일
1 (1483)	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,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명시하고,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 가. 학교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(안 제3조) 나. 교육활동에서의 교육감,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 다.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(안 제7조) 라.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권리·권한과 책임을 규정함(안 제8조) 마. 교육활동에서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(안 제9조) 바.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0조) 사.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 및 갈등의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절차를 규정함(안 제12조~안 제19조)	김혜영 의원 (찬성 69명) (교육)	2023. 12.6.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(교육위원회)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